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의사를 선임·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기관 분포의 지역별 편차 및 응급의학전문의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각 기관별로 구급지도의사를 선임·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료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위촉할 수 있도록 구급지도의사의 선임·위촉방법을 보완하여 구급활동에 대한 간접의료지도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 제3083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천배”를 “1천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제5장의2(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소속 소방공무원
-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의 사업소의 구분란 중 “12만배”를 “3천배 이상 12만배”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2대	10인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종전에는 위험물 취급·저장의 최저 기준 수량인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앞으로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확대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액체인 석유류,

알코올류 등 다량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도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 제3084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057”을 “1,065”로 하고, 일반직 계 “1,057”을 “1,0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55”를 “1,06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무선국의 허가 및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 제3084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심판장 11명과 심판관 96명”을 “심판장 51명과 심판관 5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심판장 중 1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